

1. 개정 이유

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사무 등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관리부담금 위탁기관 변경(안 제6조본문, 제7조제2항, 제8조본문)

- 1)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하던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함

나.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 반영 등(안 제8조본문, 제9조본문)

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한국석유공사(이하 “공사”를 “한국석유관리원(이하 “관리원
“이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공사는”을 “관리원은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공사는”을 “관리원은”으로,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
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, “2019년 1월 1
일”을 “2026년 3월 2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부담금 확인서류 제출)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액화석유가스·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매월 그 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<u>한국석유공사</u> 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에 제출한다.	제6조(부담금 확인서류 제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국석유관리원</u> (이하 “관리원”이라 한다)에 -----.
제7조(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의 확인 등) ① (생략) ② <u>공사는</u> 제1항에 따라 매월 부담금의 납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.	제7조(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의 확인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관리원은</u> ----- ----- --.
제8조(불이행에 따른 조치) <u>공사는</u>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담금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, 이 고시에서 정한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	제8조(불이행에 따른 조치) <u>관리원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 -----.
제9조(재검토기한)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19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9조(재검토기한)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6년 3월 2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